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부 -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	제2류			육과 식용 설육(脛肉)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3		03.01		활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루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이텔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킬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6			0304.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			0304.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스(Ictalur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			0304.3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			0304.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4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10			0304.41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			0304.4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			0304.43	-- 넙치류[플루로벡티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Pleuronectidae)과 · 바디대 (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 (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 (Soleidae)과 · 스키포탈미대 (Scophthalmidae)과 · 시타리 대(Citharidae)과]	산되었을 것
13			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과 · 유클리 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 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 · 모리대 (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 대(Muraenolepididae)과의 어 류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4			0304.45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 스(Xiphias gladi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5			0304.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6			0304.47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7			0304.48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 (Rajidae)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8			0304.4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0304.5	-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19			0304.5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 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 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루스 (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 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 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 고돈 이텔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 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 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 루스 하셀티(Osteochil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hasselti) · 랩토바르부스 호에 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 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 종], 나일 피치[라테스 니로티 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 [카나(Channa)종]	
20			0304.52	-- 연어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1			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과 · 유클리 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 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 · 모리대 (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 대(Muraenolepididae)과의 어 류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			0304.5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 스(Xiphias gladi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			0304.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			0304.5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5			0304.5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 (Rajidae)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6			0304.5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6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 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 (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루스 (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 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 (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 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 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 카 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 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길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27			0304.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8			0304.62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스(<i>Ictalurus</i>)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9			0304.6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0			0304.6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7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31			0304.71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2			0304.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3			0304.7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4			0304.74	--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5			0304.7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6			0304.7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8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fillet)	
37			0304.81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8			0304.8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39			0304.83	-- 넙치류[플루로베크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0			0304.8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우스(Xiphias gladi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1			0304.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2			0304.86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3			0304.87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 추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 (Katsuwonus) pelamis)]	거나 생산되었을 것
44			0304.88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 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45			0304.8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4.9	- 그 밖의 냉동한 것	
46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 스(Xiphias gladius)]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47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48			0304.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 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 스(Silurus)종·클라리아스 (Clarias)종·익타루러스 (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 너스(Cyprinus)종·카라시우 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 고돈 이텔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시 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 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 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 베니(Leptobarbus hoeveni)·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 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 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 [카나(Channa)종]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49			0304.94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50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과·유클리 티대(Euclichthyidae)과·가디 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 · 모리대 (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 대(Muraenolepididae)과의 어 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51			0304.9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52			0304.9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 (Rajidae)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53			0304.99	-- 기타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 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 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 거 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			0305.10	--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55			0305.20	-- 어류의 간 · 어란(魚卵) · 어백 (魚白)(건조한 것 · 훈제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 나 생산되었을 것
			0305.3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 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56			0305.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 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 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리스 (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 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 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 고돈 이텔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 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 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57			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58			0305.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5.4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59			0305.41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0			0305.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61			0305.43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 (Oncorhynchus mykiss) · 옹 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옹코 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 · 옹코 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소 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나 생산되었을 것
62			0305.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 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 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리스 (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 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 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 고돈 이텔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 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 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 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램토바르부스 호에 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 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 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 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 [카나(Channa)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 나 생산되었을 것
63			0305.4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 나 생산되었을 것
			0305.5	-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 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 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 은 제외한다]	
64			0305.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65			0305.5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루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린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램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66			0305.53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67			0305.54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명	원산지부여기준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루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루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종], 쾡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캡테루스(Decapterus)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68			0305.5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0305.6	-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69			0305.6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0			0305.62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1			0305.63	-- 멸치[엔그로리스(<i>Engraulis</i>)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2			0305.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린너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73			0305.6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0305.7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74			0305.71	-- 상어 지느러미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5			0305.72	-- 어류의 머리 · 꼬리 · 부레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나 생산되었을 것
76			0305.7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 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1	- 냉동한 것	
77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8			0306.1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9			0306.14	-- 게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0			0306.15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1			0306.1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2			0306.17	-- 그 밖의 새우류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3			0306.19	--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6.3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84			0306.3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5			0306.3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86			0306.33	-- 게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7			0306.3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8			0306.35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89			0306.36	-- 그 밖의 새우류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0			0306.39	--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6.9	- 기타	
91			0306.9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2			0306.9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3			0306.93	-- 게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4			0306.9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5			0306.95	-- 새우류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6			0306.99	--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1	- 굴	
97			0307.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8			0307.12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99			0307.1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나 생산되었을 것
			0307.2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 · 클라미스(Chlamys) · 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100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1			0307.22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2			0307.2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3	- 홍합[미틸루스(Mytilus)종 · 페르나(Perna)종]	
103			0307.3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4			0307.32	-- 냉동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5			0307.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4	- 갑오징어와 오징어	
106			0307.42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7			0307.43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08			0307.4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5	-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109			0307.5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			0307.52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1			0307.5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2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를 제외한 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7	-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 [아르치대(Arcidae)과 · 아르크티치대(Arctidae)과 · 카르디대(Cardidae)과 · 도나치대(Donacidae)과 · 히아텔리대(Hiatellidae)과 · 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 · 메소테스마티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대(Mesodesmatidae)과 · 마이이대(Myidae)과 · 세멜리대(Semelidae)과 · 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 · 솔레니대(Solenidae)과 · 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 · 베네리대(Veneridae)과]	
113			0307.7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4			0307.72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5			0307.7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8	-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과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 종]	
116			0307.81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7			0307.82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8			0307.83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9			0307.84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0			0307.87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1			0307.88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7.9	-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22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3			0307.92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4			0307.9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1	-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 (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rioidea)과]	
125			0308.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6			0308.12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7			0308.1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308.2	- 성게[스트롱길로센트로투스 (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 (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누스 에스쿨렌투스 (Echinus esculentus)]	
128			0308.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29			0308.22	-- 냉동한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			0308.29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1			0308.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2			0308.90	-- 기타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33			0401.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이하의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4			0401.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5			0401.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고 100분의 10 이하인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6			0401.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137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138		04.03		버터밀크·웅고밀크와 웅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일·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성분의 중량이 총 우유 성분 중량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유(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39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140			0404.90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1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4.06		치즈와 커드(curd)	
142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3			0406.2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4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4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성분의 중량이 총 우유 성분 중량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45%이상인 것
145			0406.4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6			0406.90	-- 그 밖의 치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산되었을 것
147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8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49		04.09		천연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0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1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2부 - 식물성 생산품					
152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3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1.1	- 코코넛	
154			0801.11	-- 말린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5			0801.12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6			0801.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01.2	- 브라질너트	
157			0801.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58			0801.22	-- 껍데기를 벗긴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01.3	- 캐슈너트(cashew nut)	
159			0801.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0			0801.32	-- 껍데기를 벗긴 것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161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2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163			0804.10	-- 대추야자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4			0804.20	-- 무화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5			0804.30	-- 파인애플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6			0804.40	-- 아보카도(avocado)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7			0804.50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8		08.05		감귤류의 과일(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69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0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1		08.08		사과 · 배 · 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2		08.09		살구 · 체리 ·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자두 · 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3		08.10		그 밖의 과일(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4		08.11		냉동 과일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5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황가스 ·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일과 견과류(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일의 혼합물	
176			0813.10	-- 살구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7			0813.20	-- 프룬(prune)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8			0813.30	-- 사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79			0813.40	-- 그 밖의 과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0			0813.50	-- 이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1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1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82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3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0901.2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4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185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186			0901.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87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88		09.03		마테(maté)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 (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 (Pimenta)속의 열매	
			0904.1	- 후추	
189			0904.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90			0904.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0904.2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91			0904.21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 수지도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92			0904.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93		09.05		바닐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94			0906.11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 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95			0906.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96			0906.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97		09.07		정향(丁香)(과일·꽃·꽃대로 한 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98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 소두구(小荳蔻)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199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 회향(茴香)·고수(coriander)·쿠 민(cumin)·캐러웨이(caraway) 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 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0910.1	- 생강	
200			0910.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201			0910.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202			0910.20	-- 사프란(saffron)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 산되었을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203			0910.30	-- 심황[강황(薑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09101.9	- 그 밖의 향신료	
204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05			0910.99	-- 기타	가. 타임 및 월계수의 잎 :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나. 기타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06	제10류			곡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207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 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208			1102.20	-- 옥수수가루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09			1102.90	-- 기타	가. 쌀가루, 호밀가루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나. 기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 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1103.1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210			1103.11	-- 밀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211			1103.13	-- 옥수수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212			1103.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13			1103.20	-- 펠릿(pellet)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뿔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1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214			1104.12	-- 귀리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4.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15			1104.19	-- 기타 곡물로 만든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104.2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뿔은 것)	
216			1104.22	-- 귀리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17			1104.23	-- 옥수수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18			1104.2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19			1104.3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220			1105.1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1			1105.20	--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2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223			1107.10	-- 볶지 않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4			1107.20	-- 볶은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5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6		11.09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27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 각종 종자와 과일, 공업용·의약용 식물, 잎과 사료용 식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228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229			1302.11	-- 아편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0			1302.12	-- 감초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1			1302.13	-- 홉(hop)으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2			1302.14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3			1302.1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4			1302.20	--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1302.3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235			1302.31	-- 한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70%이상인 것
236			1302.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7			1302.39	-- 기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38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3부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39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15.50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240			1517.1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241			1517.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42		15.18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부 -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243		16.01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244			1602.2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2.3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45			1602.31	-- 칠면조로 만든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46			1602.32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47			1602.39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2.4	- 돼지로 만든 것	
248			1602.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49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50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51			1602.50	-- 소로 만든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52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253			1604.11	-- 연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4			1604.12	-- 청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55			1604.13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56			1604.15	-- 고등어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57			1604.16	-- 멸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58			1604.17	-- 뱀장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59			1604.18	-- 상어 지느러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0			1604.1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1			1604.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04.3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262			1604.31	-- 캐비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63			1604.32	-- 캐비아 대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4.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64			1605.10	-- 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1605.2	- 새우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265			1605.21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266			1605.2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 FOB가격의 35%이상인 것.
267			1605.30	-- 바닷가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68			1605.40	-- 그 밖의 갑각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5.5	- 연체동물	
269			1605.51	-- 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0			1605.52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1			1605.53	-- 홍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2			1605.54	-- 갑오징어와 오징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3			1605.55	-- 문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5호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4			1605.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5			1605.57	-- 전복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6			1605.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7			1605.5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1605.6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278			1605.61	-- 해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79			1605.62	-- 성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80			1605.63	-- 해파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81			1605.6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1605.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 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82			1901.10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283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 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284			1901.90	-- 기타	한국의 제1901.90.2010호, 제1901.90.2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날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85			1904.90	-- 기타	한국의 제1904.90.1010호, 제1904.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 상품의 소호에서 다른 소호로 제공되지 않은 한 최소허용기준은 당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소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3	-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286			1905.31	-- 스위트 비스킷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1905.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7			1905.32	-- 와플과 웨이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1905.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88			1905.90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제19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89			2003.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9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90			2005.91	-- 죽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91			2005.99	-- 기타	한국의HS 제2005.99.1000호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292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1	-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3			2008.11	-- 땅콩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94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95			2008.20	-- 파인애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008.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96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7			2008.97	-- 혼합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8			2008.9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0.09	과일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4	- 파인애플주스	
299			2009.41	-- 기준당도(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300			2009.4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009.8	- 그 밖에 한 가지 과일이나 채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소로 된 주스	
301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8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2			2009.8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03			2009.90	-- 혼합 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 · 차 ·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 · 차 ·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304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305			2103.90	-- 기타	한국의 제2103.90.1030호, 제2103.90.9030호, 제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306			2106.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22류			음료 · 주류 · 식초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307			2202.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2202.9	- 기타	
308			2202.91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309			2202.9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310		22.03		맥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2	-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311			2204.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2			2204.22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4.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3			2204.29	--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314			2208.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5			2208.30	-- 위스키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2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16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317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3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318			2306.5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30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319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320			2309.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321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퀄런(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322			2402.20	-- 퀄런(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제6부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9류			유기화학품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2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323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24			2921.2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325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26			2922.15	-- 트리에탄올아민	제2922.19호의 트리에탄올아민의 염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2.4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327			2922.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2.4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8			2923.3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제2923.40호 및 제29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29			2923.4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제2923.30호 및 제29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30			2923.90	-- 기타	제2923.30호 및 제292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9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앵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1			3301.30	-- 레지노이드(resinoid)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33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332			3301.90	-- 기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제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제품으로 한정한다)	
333			4011.10	-- 승용자동차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차용을 포함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334			4011.20	-- 버스용 · 화물차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335			4011.40	-- 모터사이클용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1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5%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8부 -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쉼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2	- 장갑류	
336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디자인 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4203.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337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38		50.02		생사(폰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39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0		50.06		견사 ·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제50.04호에서 제50.05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1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342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3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4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5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6		51.05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7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제51.06호에서 제5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8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49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0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제52류			면	
351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2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3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4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제52.04호에서 제5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355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356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7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靸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8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3.05호에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59		53.09		아마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0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1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 또는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 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362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3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4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5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6		54.05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7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프섬유	
368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69		55.0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0		55.03		합성스테이프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1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프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2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3		55.06		합성스테이프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4		55.07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프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375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제55.08호에서 제5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376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7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8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79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0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1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382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위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 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3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4		56.09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	
385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6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7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8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89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390		58.01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1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2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3		58.04		틸(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 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 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 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 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4		58.05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 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5		58.06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6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7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398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8.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399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 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0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1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2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갈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3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4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5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 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406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7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8		59.1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09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410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1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412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뿔뿔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3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 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뿔뿔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4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5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6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7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8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19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0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1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2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3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4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5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426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427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8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룩(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29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0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양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1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2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433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4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5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6		62.10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7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8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39		62.13		손수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어야 하며, 그 상품은 수출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0		62.14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원산지 상품이어야 하며, 그 상품은 수출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1		62.15		넥타이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2		62.16		장갑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3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류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넘마	
444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5		63.02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table linen) ·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주방린넨(kitchen linen)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6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7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8		63.05		포장용 빈 포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49		63.06		방수포(tarpaulin) · 차양 · 차일, 텐트,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50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51		63.08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 해당하는 직물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하며, 그 상품은 어느 당사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52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453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제13부 -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2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2.9	- 기타	
454			6802.91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80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455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쉬트·패널·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6811.8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456			6811.82	--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8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69류			도자제품	
457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제69.07호에 해당하는 광택이 없는 물품에서 제69.07호에 해당하는 광택이 있는 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14부 -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458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진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459			7102.10	-- 선별하지 않은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2.2	- 공업용	
460			7102.2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갬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1			7102.2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2.3	- 공업용이 아닌 것	
462			7102.3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갬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3			7102.3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2.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진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출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464			7103.1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3.9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465			7103.91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6			7103.9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3.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진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출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467			7104.10	-- 압전기용 석영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8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20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69			7104.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470			710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1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71			7113.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3.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72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3.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1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73			7114.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74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4.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475			7115.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476			7116.1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77			7116.2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7.1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478			7117.11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79			7117.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71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5부 -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480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81			7220.1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20.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2			7220.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20.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483		74.08		구리의 선	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8호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84		74.13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 연한 것은 제외한다)	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3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485		76.05		알루미늄의 선	제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5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86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 (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제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4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 (cermet), 이들의 제품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 한다]	
487			8104.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 밥(rasping)·연삭설(tuning) ·알갱이, 가루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104.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 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 서류용 클립·책인용 태그와 이 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 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 가구류용·포장용의 것)	
488			8305.1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 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 (fitting)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305.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89			8305.2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 (staple)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305.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90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16부 - 기계류 ·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 음성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제84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491			8415.10	--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7	- 탑승교	
492			8479.71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79.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93			8479.7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79.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479.8	- 그 밖의 기기	
494			8479.81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79.8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95			8479.8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7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496			8482.10	-- 볼베어링(ball bearing)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 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497			8486.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98			8486.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499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00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85.04		변압기 · 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501			8504.50	-- 그 밖의 유도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85.08		진공청소기	
			8508.1	- 전동기를 갖춘 것	
502			8508.19	-- 기타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03			8508.6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08.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1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504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7.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7.6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505			8517.61	-- 기지국	가. 제8517.61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송신기기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06			8517.62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가. 제8517.62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송신기기가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07			8517.70	-- 부분품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7.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508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09			8518.50	-- 음향증폭세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510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테크)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턴 테이블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2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511			852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matrice)과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5	- 반도체 매체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512			8523.52	-- 스마트카드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3.5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513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14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텔레비전 천연색 수신용의 기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15			8528.72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8.7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16			8529.90	-- 기타	같은 소호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2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517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2.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518			8536.10	-- 퓨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2	-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 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519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9.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39.3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520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9.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21			8539.5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9.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22			8539.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 광전관[예: 진공관 ·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523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24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25			8540.60	-- 그 밖의 음극선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0.7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 · 속도변조관(klystron) · 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 · 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526			8540.71	-- 자전관(magnetron)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인 것
527			8540.79	-- 기타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속도변조관(klystron)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0.8	- 그 밖의 관	
528			8540.8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89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0.9	- 부분품	
529			8540.91	-- 음극선관의 것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0.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530			8541.90	-- 부분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31		85.42		전자집적회로	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가 아닌 것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532			8543.70	-- 그 밖의 기기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장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타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533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디젤이나 세미디젤 (semi-diesel)]만을 갖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34			8702.2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디젤이나 세미디젤 (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45%이상일 것
535			8702.30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 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 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36			8702.4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37			8702.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538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 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39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0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1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 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3.3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542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 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3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4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 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5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6			8703.5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47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8			8703.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49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50			8703.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551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4.2	-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552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53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하고 20톤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54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4.3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555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56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57			8704.90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558			8708.40	--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기어박스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 이상인 것
559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 이상인 것
560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 이상인 것
			8708.9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561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방열기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 이상인 것
562			8708.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나. 부분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 이상인 것
563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 (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64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65			8708.99	-- 기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5%이상일 것
566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합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45%이상일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567			8907.1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50%이상인 것
제18부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1	- 대물렌즈	
568			9002.11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90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69			9002.19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90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70			9002.20	-- 필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90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571			9002.90	-- 기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90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제20부 -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 명	원산지부여기준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572			9403.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573			9403.40	-- 주방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574			9403.50	-- 침실용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
575			9403.60	-- 그 밖의 목제가구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일 것